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158,795,024	244,763,851
일반회계	7,324,978,033	219,749,341
특별회계	833,816,991	25,014,510
기타특별회계	833,816,991	25,014,510
코리아인태내셔널서킷 특별회계	4,196,104	125,883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3,961,829	718,85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1,718,682	14,451,56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576,940	167,30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000,000	180,000
소방특별회계	312,241,849	9,367,255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21,587	3,64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207,39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5,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